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79 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김종양·고동진·김성원

이종배 • 백종헌 • 주진우

강선영 · 강대식 · 신성범
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, 법률·조약·국 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,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「경 찰관 직무집행법」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 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스민감정보(제23조) 중 유전정보, 범죄 경력, 생체정보 스고유식별정보(제24조) 스주민등록번호(제24조의2)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(국제협력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자료 교환 중 국제공조 또는 범죄의 예방·대응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3(국제협력) (생 략)	제8조의3(국제협력) ① (현행 제
	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서 정한 자료 교환
	중 국제공조 또는 범죄의 예방
	•대응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국
	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
	<u>령으로 정한다.</u>